

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1. 적용범위

본 규정은 당사의 정관에 의거한 내부거래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.

2. 목적

내부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,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기업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해당사항 없음

4. 책임과 권한

4.1 위원회

위원회는 회사와 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“공정거래법”이라 한다) 및 그 시행령에 의한 특수 관계인(이하 “특수관계인”이라 한다)을 상대 방으로 하거나,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(이하 “내부거래”라 한다)를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.

4.2 위원장

4.2.1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한다.

(단, 위원장은 사외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)

4.2.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4.2.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4.2.4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4.3 간사

4.3.1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하고, 내부거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.

4.3.2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4.4 위원

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각 팀(분공장)에 전파하고 확산시켜 기업문화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5. 절차개요

해당사항 없음.

6. 절차

6.1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

- 6.1.1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.
- 6.1.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6.1.3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6.2 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처리

- 6.2.1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3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6.2.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6.2.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- 6.2.3 위원회는 내부거래에 관한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위원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며,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6.2.4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6.3 부의사항

- 6.3.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의한 대규모 거래(단,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외)
- 6.3.2 기타 내부거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

6.4 관계인의 의견청취

- 6.4.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6.4.2 위원회는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6.5 의사록

- 6.5.1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6.5.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7. 기록

기록명	양식번호	보관기간	보존기간	보관팀
1. 내부거래위원회 회의록	ASG-AF-30200-01	1	5	해당팀

8. 관련문서

해당사항 없음